

규정류(제정·개정)입안서

1. 규정류명 : 장안대학교 학칙,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2. 규정류(제정·개정)사유 :

2027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 반영, 학과 구조조정위원회 운영 안정성 강화 및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맞추어 관련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

[장안대학교 학칙]

○ 2027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및 글로벌케어복지과 소속 학부 변경

○ 등록금심의위원회 근거 조항 신설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 부위원장 신설, 위원 정원 확대, 자문위원 운영 근거 마련

○ 회의록 작성·보관 및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신설, 간사 지명 자구 정비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 회의 소집 시 일시·안건 및 회의자료 사전 통지 의무화

4.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

공포일부터 시행

5.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6. 첨부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개정시) 1부.

나. 규정류(제정·개정)안 전문 1부.

2026년 5월 29일

소관부서 : 기획처

홍정화 (홍정화)

관련부서 :

(인)

신·구조문대비표

규정명 : 장안대학교 학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제1조~제4조 (생략)</p> <p>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교에는 전문학사과정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두며, 학부,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5.)(개정 2024.5.17.)(개정 2025.4.29.)</p> <p>제6조~제77조 (생략)</p>	<p>제1조~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교에는 전문학사과정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두며, 학부,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5.)(개정 2024.5.17.)(개정 2025.4.29.)(<u>개정 2026.00.00.</u>)</p> <p>제6조~제77조 (현행과 같음)</p> <p><u>제77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의 책정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26.00.00.></u> <u>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6.00.00.></u></p>	<p>2027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과별 입학정원을 조정</p> <p>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근거조항 신설</p>
<p>제78조~제81조 (생략)</p> <p>제82조(제위원회) ① 본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 대학정보화위원회, 인사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재입학심사위원회, <u>등록금심의위원회</u> 및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28.)</p> <p>②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제78조~제81조 (현행과 같음)</p> <p><u>제82조(제위원회) ① 본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 대학정보화위원회, 인사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재입학심사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28.)(개정 2026.00.00.)</u></p> <p>②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제77조의2 신설로 제1항 중 등록금심의위원회 삭제</p>
<p>제82조의2 ~ 제9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제82조의2 ~ 제96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별</u></p>	

<p>제5조의 [별표 1] 별첨</p>	<p><u>표 1]의 입학정원은 2027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u></p> <p><u>제2조(학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u> <u>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되었던 다음의 학과는 각각 현행 학 부로 본다.</u></p> <p><u>제5조의 [별표 1](개정 2023.5.30.)(개정 2024.5.17.)(개정 2025.4.29.)(개정 2026. 00. 00.)</u> <u><설치학과 및 입학정원></u></p>	
-----------------------	--	--

[변경전]

제5조의 [별표 1](개정 2023.5.30.) (개정 2024.5.17.) (개정 2025.4.29.)

<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모집 유보	총 입학정원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모집 유보	총 입학정원			
호텔 관광 학부	항공관광과		100		100	호텔 관광 학부	항공관광과		100		100	
	호텔 외식 조리과	호텔조리전공	30		30		호텔 외식 조리과	호텔조리전공	30		30	
		카페베이커리전공	30		30			카페베이커리 전공	30		30	
	호텔경영과		60		60		호텔 관광과	호텔경영전공	40		40	
	관광레저경영과		60		60			관광레저경영 전공	40		40	
예술 디자인 학부	실용음악과		70		70	예술· 콘텐츠 학부	실용음악과		70		70	
	실용·스트리트댄스과		30	10	40		방송스타일리스트과		30	10	40	
	미디어스토리텔링과		30	10	40		뷰티케어과		50		50	
	뷰티케 어과	헤어전공	50		50		영상미디어콘텐츠과(3년 제)		40	30	70	
		코스메틱·스킨케어전 공					웹툰애니메이션과(3년 제)		40		40	
		메이크업·네일아트전 공					미디어스토리텔링과		30	10	40	
	스타일리스트과		30	10	40		게임콘텐츠과(3년제)		40	30	70	
	패션디자인과		40		40		디자인 학부	패션디자인과		40		40
패션주얼리디자인과		30	10	40	패션주얼리디자인과			30	10	40		
					반려동물산업디자인과			30		30		
IT· 콘텐츠 학부	컴퓨터공학과(3년제)		30	30	60	AI 컴퓨팅 학부	컴퓨터공학과(3년제)		40	30	70	
	게임콘텐츠과(3년제)		60	30	90		AI융합과		30	10	40	
	영상미디어콘텐츠과(3년제)		40	40	80		보건 복지 학부	사회복지과		90		90
	시각 콘텐츠 과	시각디자인전공	30		30			상담재활복지과		40		40
웹툰애니메이션전공		30		30	생활스포츠과			70		70		
보건 복지 학부	사회복지과		60		60	생활스포츠(족구)과*		20		20		
	상담재활복지과		40		40	스포츠재활과		30	10	40		
	생활스포츠과		70		70	바이오동물보건과		60		60		
	생활스포츠(족구)과*		20		20	응급구조학과(3년제)		30		30		
	스포츠재활과		30	10	40	푸드케어과*		30		30		
	바이오동물보건과		60		60	인문 사회 학부	경영과	온라인마케팅 전공	20		20	
	식품영양학과(3년제)		20	30	50			창업경영전공	20		20	
	푸드케어과*		20		20			글로벌경영 전공	20		20	
인문 사회 학부	경영과	온라인마케팅전공	30		30		세무회계과		30	10	40	
		비즈니스창업전공	30		30	경찰행정과		30	10	40		
	글로벌경영과		40		40	일본어콘텐츠과		40		40		
	복지행 정법률 과	복지행정전공	30		30	유아교육과(3년제)		40		40		
		경찰법률전공	20	10	30	자유전공		80	50	130		
	세무회계과		30	10	40	글로벌케어복지과		40	10	50		
	일본어콘텐츠과		40		40	드론산업과*		20		20		
	유아교육과(3년제)		40		40	파크골프산업과*		30		30		
군사과		30	10	40	자유 학부	K-Model과		-		-		
자유전공		30		30		교양과		-		-		
글로벌 자유 학부	글로벌케어복지과		40		40							
	IT융합과		20	10	30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모집 유보	총 입학정원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모집 유보	총 입학정원
					합계		1,450	220	1,670
교양 학부	교양과	-	-	-	주1) "*"는 성인학습자전담학과 (4개) 주2) 모집유보 12개(학)과 220명 주3) K-Model과 : 정원의 전담학과(외국인유학생 대상)				
합계		1,450	220	1,670					

주1) "*"는 성인학습자전담과

주2) 모집유보 13개 (학)과 220명

주3) 글로벌자율학부 "글로벌케어복지과, IT융합과는 외국어
(영어 등)로 수업 운영

[변경전]

제5조의 [별표 1](개정 2023.5.30.) (개정 2024.5.17.) (개정 2025.4.29.)

<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모집 유보	총 입학정원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모집 유보	총 입학정원			
호텔관광학부	항공관광과		100		100	호텔관광학부	항공관광과		100		100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30		30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30		30	
		카페베이커리전공	30		30			카페베이커리전공	30		30	
	호텔경영과		60		60		호텔관광과	호텔경영전공	40		40	
	관광레저경영과		60		60			관광레저경영전공	40		40	
예술디자인학부	실용음악과		70		70	예술·콘텐츠학부	실용음악과		70		70	
	실용·스트릿댄스과		30	10	40		방송스타일리스트과		30	10	40	
	미디어스토리텔링과		30	10	40		뷰티케어과		50		50	
	뷰티케어과	헤어전공	50		50		영상미디어콘텐츠과(3년제)		40	30	70	
		코스메틱·스킨케어전공					웹툰애니메이션과(3년제)		40		40	
		메이크업·네일아트전공					미디어스토리텔링과		30	10	40	
	스타일리스트과		30	10	40		게임콘텐츠과(3년제)		40	30	70	
	패션디자인과		40		40		패션디자인과		40		40	
패션주얼리디자인과		30	10	40	패션주얼리디자인과		30	10	40			
IT·콘텐츠학부	컴퓨터공학과(3년제)		30	30	60	AI컴퓨팅학부	컴퓨터공학과(3년제)		40	30	70	
	게임콘텐츠과(3년제)		60	30	90		AI융합과		30	10	40	
	영상미디어콘텐츠과(3년제)		40	40	80		사회복지과		90		90	
	시각콘텐츠과	시각디자인전공	30		30		상담재활복지과		40		40	
		웹툰애니메이션전공	30		30		생활스포츠과		70		70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과		60		60	보건복지학부	생활스포츠(축구)과*		20		20	
	상담재활복지과		40		40		스포츠재활과		30	10	40	
	생활스포츠과		70		70		바이오동물보건과		60		60	
	생활스포츠(축구)과*		20		20		응급구조학과(3년제)		30		30	
	스포츠재활과		30	10	40		푸드케어과*		30		30	
	바이오동물보건과		60		60		인문사회학부	경영과	온라인마케팅전공	20		20
	식품영양학과(3년제)		20	30	50				창업경영전공	20		20
	푸드케어과*		20		20				글로벌경영전공	20		20
인문사회학부	경영과	온라인마케팅전공	30		30	세무회계과		30	10	40		
		비즈니스창업전공	30		30	경찰행정과		30	10	40		
	글로벌경영과		40		40	일본어콘텐츠과		40		40		
	복지행정법률과	복지행정전공	30		30	유아교육과(3년제)		40		40		
		경찰법률전공	20	10	30	자유전공		80	50	130		
	세무회계과		30	10	40	글로벌케어복지과		40	10	50		
	일본어콘텐츠과		40		40	드론산업과*		20		20		
유아교육과(3년제)		40		40	파크골프산업과*		30		30			
글로벌자율학부	군사과		30	10	40	자율학부	K-Model과		-		-	
	자유전공		30		30		교양과		-		-	
	글로벌케어복지과		40		40							
IT융합과		20	10	30	교양학부	교양과		-		-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모집 유보	총 입학정원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모집 유보	총 입학정원
					합계		1,450	220	1,670
교양 학부	교양과	-	-	-	주1) "*"는 성인학습자전담학과 (4개) 주2) 모집유보 12개(학)과 220명 주3) K-Model과 : 정원의 전담학과(외국인유학생 대상)				
합계		1,450	220	1,670					

주1) "*"는 성인학습자전담과

주2) 모집유보 13개 (학)과 220명

주3) 글로벌자율학부 "글로벌케어복지과, IT융합과는 외국어
(영어 등)로 수업 운영

[변경후]

제5조의 [별표 1](개정 2023.5.30.) (개정 2024.5.17.) (개정 2025.4.29.) (개정 2026.00.00.)

<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모집 유보	총 입학정원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모집 유보	총 입학정원		
호텔관광학부	항공관광과	100		100	호텔관광학부	항공관광과	100		100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30			30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30		30
		카페베이커리전공	30			30		카페베이커리전공	30		30
	호텔관광과	호텔경영전공	40			40	호텔관광과	호텔경영전공	40		40
관광레저경영전공		40		40	관광레저경영전공	30			30		
예술·콘텐츠학부	실용음악과	70		70	예술·콘텐츠학부	실용음악과	보컬전공	70		70	
	방송스타일리스트과	30	10	40			미디어 및 싱어송라이터전공	-		-	
	뷰티케어과	50		50			기악전공	-		-	
	영상미디어콘텐츠과(3년제)	40	30	70		방송스타일리스트과	30	10	40		
	웹툰애니메이션과(3년제)	40		40		뷰티케어과	헤어전공	50		50	
	미디어스토리텔링과	30	10	40			피부미용전공	-		-	
	게임콘텐츠과(3년제)	40	30	70			메이크업네일전공	-		-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과	40		40	디자인학부	영상미디어콘텐츠과(3년제)	40	30	70		
	패션주얼리디자인과	30	10	40		웹툰애니메이션과(3년제)	40		40		
	반려동물산업디자인과	30		30		미디어스토리텔링과	30	10	40		
AI컴퓨팅학부	컴퓨터공학과(3년제)	40	30	70	AI컴퓨팅학부	게임콘텐츠과(3년제)	40	30	70		
	AI융합과	30	10	40		패션디자인과	40		40		
보건지학부	사회복지과	90		90	보건지학부	패션주얼리디자인과	30	10	40		
	상담재활복지과	40		40		반려동물산업디자인과	30		30		
	생활스포츠과	70		70		컴퓨터공학과(3년제)	40	30	70		
	생활스포츠(족구)과*	20		20		AI융합과	30	10	40		
	스포츠재활과	30	10	40		사회복지과	90		90		
	바이오동물보건과	60		60		상담재활복지과	40		40		
	응급구조학과(3년제)	30		30		글로벌케어복지과	40	10	50		
	푸드케어과*	30		30		생활스포츠과	70		70		
인문사회학부	경영과	온라인마케팅전공	20		20	인문사회학부	생활스포츠(족구)과*	20		20	
		창업경영전공	20		20		스포츠재활과	30	10	40	
		글로벌경영전공	20		20		바이오동물보건과	60		60	
	세무회계과	30	10	40	응급구조학과(3년제)		30		30		
	경찰행정과	30	10	40	푸드케어과*		30		30		
	일본어콘텐츠과	40		40	경영과		온라인마케팅전공	20		20	
	유아교육과(3년제)	40		40			창업경영전공	20		20	
자유전공	80	50	130	글로벌경영전공		20		20			
자율학부	자유전공	80	50	130	자율학부	세무회계과	30	10	40		
	글로벌케어복지과	40	10	50		경찰행정과	30	10	40		
						일본어콘텐츠과	40		40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모집 유보	총 입학정원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주간)	모집 유보	총 입학정원
	드론산업과*	20		20	자유 학부	유아교육과(3년제)	40		40
	파크골프산업과*	30		30		자유전공	90	50	140
	K-Model과	-		-		드론산업과*	20		20
교양 학부	교양과	-		-		파크골프산업과*	30		30
합계		1,450	220	1,670	교양 학부	교양과	-		-
					합계		1,450	220	1,670

주1) "*"는 성인학습자전담학과 (4개)
주2) 모집유보 12개(학)과 220명
주3) K-Model과 : 정원의 전담학과(외국인유학생 대상)

주1) "*"는 성인학습자전담학과 (4개)
주2) 모집유보 12개(학)과 220명

신·구조문대비표

규정명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1조~제9조 ①항 (생략)</p> <p>제9조(위원회 구성)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p>	<p>제1조~제9조 ①항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 구성)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6.00.00) ③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00.00)</p>	<p>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필요 및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위원장 신설</p> <p>다양한 학과·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장 정원 확대</p>
<p>④항~⑤항 (생략)</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교원간사 1인 및 주무부서의 직원 중 행정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p> <p><신설></p>	<p>④~⑤항 (현행과 같음)</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위원장은 위원 중 교원간사 1인 및 주무부서의 직원 중 행정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u> (개정 2026.00.00)</p> <p>⑦ <u>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u><신설 2026.00.00></p>	<p>문구 정비</p> <p>구조조정 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자문위원 운영 근거 마련</p>
<p>제10조~제11조 ②항 (생략)</p> <p><신설></p>	<p>제10조~제11조 ②항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회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 대외비로 별도 보관한다.</u><신설 2026.00.00> ④ <u>위원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신설 2026.00.00></p>	<p>구조조정 관련 회의 운영의 신뢰성 및 자료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p>
<p>제12조~제18조 (생략)</p>	<p>제12조~제18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진행되었던 학과 평가 및 구조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규정 이전에 경영계열, 자율 융합계열, 글로벌자율계열의 학사학 위전공심화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장 근접유사학과로 편성한다.</p> <p>제3조(타규정폐지)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학과평가 및 학과구조 조정 규정은 폐지’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진행되었던 학과 평가 및 구조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규정 이전에 경영계열, 자율 융합계열, 글로벌자율계열의 학사학 위전공심화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장 근접유사학과로 편성한다.</p> <p>제3조(타규정폐지)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학과평가 및 학과구조 조정 규정은 폐지’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p>	
--	--	--

신·구조문대비표

규정명 :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제1조 ~ 제2조 (생략)</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9 인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하 되 어는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 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 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8.)</p> <p>② 위원은 다음 호와 같이 구성 한다.(개정 2021.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직원 4인(법인이 추천하 는 인사 1인 포함) 2. 학생대표 3인 3. 관련 전문가 2인(총장과 학 생대표가 합의한 자이어야 하며, 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는 자는 제외)(개정 2021.1.28.) <p>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8.)</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 한다.</p> <p>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한다. (시행 2020.1.2 1.)</p> <p>제4조 (생략)</p> <p>제5조(회의)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 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7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회의에서 위 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 닌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등 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29.)</p> <p>② 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생대 표 2인, 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p>	<p>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관련 전문가 2인(총장과 학 생대표가 합의한 자이어야 하며, 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는 자는 제외)(개정 2021.1.28.) (개정 2026.00.00.)</u>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29.) (개정 2026.00.00.)</u></p>	<p>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2022.2.7., 일부개정) 제2조(등록금 심의 위원회) 개정된 내용을 따름</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29.)</p> <p>제6조 ~ 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③ <u>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6.00.00.></u></p> <p>1. <u>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u></p> <p>2. <u>회의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u></p> <p>제6조 ~ 제8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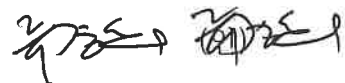
규정류(제정·개정)입안서

1. 규정류명 : 장안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2. 규정류(제정·개정)사유 :
 - 성인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경조사 출석인정 범위 확대
 -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간 표기의 통일
 - 학생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면접 참석 출석인정 반영
 - 학칙의 균입대 휴학자 출석인정 기준을 반영하여 규정 간의 정합성 확보
3. 주요내용 :
 - 제15조(출석인정) 제1항 5-2호 신설, 9호 개정, 11-2호 신설, 13-2호 신설
4. 시행 예정일 또는 요청일 : 공포일부터 시행
5. 참고사항
 - 가. 관련규정: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6. 첨부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개정 시) 1부.
 - 나. 규정류(제정·개정)안 전문 1부.

2026년 5 월 28 일

소관부서 : 교무처

관련부서 :



(인)

신·구조문대비표

규정명 : 장안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제1조 ~ 제14조 (생략)</p> <p>제15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징병(신체)검사 : 검사일 전후 3일 이내 2. 예비군 교육 : 해당기간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합,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4. 국내외 학생 회합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참석하는 경우 : 해당기간 5. 본인결혼 : 5일 <p>5-2.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배우자 및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 5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2일 8. 직계가족의 회갑 : 1일 9. 질병으로 인한 경우(병·의원 전문의 진료확인서 첨부) : 1주일 10. 총장이 승인한 학교 행사기간 : 해당일 11. 조기(미출석)취업 학생 : 해당일 <p>11-2. 신설</p>	<p>제1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p> <p>제15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징병(신체)검사 : 검사일 전후 3일 이내 2. 예비군 교육 : 해당기간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합,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4. 국내외 학생 회합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참석하는 경우 : 해당기간 5. 본인결혼 : 5일 <p>5-2. 자녀결혼 : 해당일 <신설 2026.00.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배우자 및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 5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2일 8. 직계가족의 회갑 : 1일 9. 질병으로 인한 경우(병·의원 전문의 진료확인서 첨부) : 7일 (개정 2026.00.00.) 10. 총장이 승인한 학교 행사기간 : 해당일 11. 조기(미출석)취업 학생 : 해당일 <p>11-2.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 참석 : 해당일 <신설 2026.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결혼 : 성인학습자 특성(토요일 수업 운영 및 연령대)을 고려한 경조사 범위 확대 -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간 표기를 “1주일” 에서 “7일” 로 변경하여 타 조항과 규정 문구를 통일함 -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 참석 : 학생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12.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출산 21일, 배우자의 출산 10일 (개정 2021.4.28.)</p> <p>13. 개강후 수업 3주(21일) 이내에 복학 시 : 전역일 까지의 수업</p> <p><u>13-2. 신설</u></p> <p>14.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 해당기간</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결석계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교무처장은 결석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석인정을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출석인정을 통보받은 학과장은 해당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각 과목별 담당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과목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해당되는 출석인정일은 휴일을 포함한다. <신설 2021.4.28.></p> <p>제16조 ~ 제53조(생략)</p> <p><u><신설></u></p>	<p>12.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출산 21일, 배우자의 출산 10일 (개정 2021.4.28.)</p> <p>13. 개강후 수업 3주(21일) 이내에 복학 시 : 전역일 까지의 수업</p> <p><u>13-2. 수업일수 4분의 3이 경과한 이후 휴학한 군입대자 : 종강일 까지의 수업 <신설 2026.00.00.></u></p> <p>14.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 해당기간</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 ~ 제53조(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경과조치) 제15조(출석인정) 제1항 제5-2호, 11-2호, 13-2호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u></p>	<p>- 학칙 제45조(출석인정) 제2항(해당학기 총 수업일수 4분의 3이 경과한 이후 휴학한 군입대자의 잔여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에 따라 군입대 휴학자의 출석인정 기준을 본 조항에 반영하고자 함</p>

2019.12.1.) (개정 2024. 8. 1.)

⑤ 공휴일, 개교기념일, 그 밖에 정부 또는 본교에서 임시휴일로 정하는 날에 강의가 있는 경우 보강주의 해당요일, 해당교시, 해당강의실로 휴·보강이 자동연계 처리된다. 단, 자동연계된 보강일에 강의가 불가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

제12조(특별강의) 교양 및 전문적인 특별강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현장실습) 현장실습은 최대 효과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시행학과는 실습 인원별 적정 현장실습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8.)
2. 현장실습 학과에 대한 현장실습과목은 1~3학점으로 하되, 표준현장실습 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최소 1개월, 20일 이상)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 고유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4.28.)
3. <삭제>(2021.4.28.)
4. 현장실습 학과의 현장실습 기간은 1~3학년 학기 및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4주 이상 학교주도형 또는 실습기관주도형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기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21.4.28.)
5. 현장실습 학기제는 표준현장실습 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28.)
6. 현장실습 대상학과가 아닌 학과의 현장실습 학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출석) 학생은 이수할 과목에 배정된 실강 시간 수의 4분의 3을 초과하여 출석하여야 하며, 4분의 3미만인 학생은 학기말 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

제15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1.)

1. 질병(신체)검사 : 검사일 전후 3일 이내
2. 예비군 교육 : 해당기간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합,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4. 국내외 학생 회합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참석하는 경우 : 해당기간
5. 본인결혼 : 5일

5-2. 자녀결혼 : 해당일 <신설 2026.00.00.>

6. 배우자 및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 5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2일
8. 직계가족의 회갑 : 1일
9. 질병으로 인한 경우(병·의원 전문의 진료확인서 첨부) : 7일 (개정 2026.00.00.)
10. 총장이 승인한 학교 행사기간 : 해당일
11. 조기(미출석)취업 학생 : 해당일

11-2.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 참석 : 해당일 <신설 2026.00.00.>

12.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출산 21일, 배우자의 출산 10일 (개정 2021.4.28.)
13. 개강후 수업 3주(21일) 이내에 복학 시 : 전역일 까지의 수업
- 13-2. 수업일수 4분의 3이 경과한 이후 휴학한 군입대자 : 종강일 까지의 수업 <신설 2026.00.00.>
14.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 해당기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결석계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결석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석인정을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출석인정을 통보받은 학과장은 해당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각 과목별 담당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과목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해당되는 출석인정일은 휴일을 포함한다. <신설 2021.4.28.>

제15조의2(예비군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②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신설 2024.12.1.>

규정류(제정·개정)입안서

1. 규정류명 : 직제규정

2. 규정류(제정·개정)사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함.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두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위 근거에 따라 우리대학은 학생지원팀 내 장애학생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학생지원팀-2026-73(시행일자, 2026.04.02.)에 의거 현재 우리대학의 장애학생 수가 17명으로 확인되어 법령상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이에 장애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학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제 규정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편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조직) 2. 부속기간 처. 장애학생지원센터<신설>

4. 시행 예정일 : 공포일로부터 시행

5. 참고사항

- 가. 관련규정: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부분 발취)
2. 장애학생지원규정(공포 제2025-7호(개정 2025.9.25.))
- 나. 관련근거: 2026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현황 보고(추가), 학생지원팀-2026-000073
(시행일자, 2026.04.02.)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관련부서: 해당없음

6. 첨부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개정 시) 1부.
- 나. 규정류(제정·개정)안 전문 1부.

2026년 월 일

소관부서: 학생지원처 배 장 은
관련부서: 기 획 처 홍 정 화

11/22/26
홍정화

규정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규정명: 직제규정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제1조 (생략)</p> <p>제3조(조직) ① (생략)</p> <p>1. (생략)</p> <p>2. 부속기간 가. ~ 저.(생략) <u>처. <신설></u></p> <p>제4조 ~ 제14조 (생략)</p> <p><신 설></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부속기간 가. ~ 저.(현행과 같음) <u>처, 장애학생지원센터<신설></u></p> <p>제4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월 0일부터 <u>시행한다.</u></p>	<p>현행법에 맞게 개정</p>